



제2916호 2023. 10. 4.(수)

www.jeonbuk.go.kr

조 례

- 전라북도 조례 제5337호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전라북도 조례 제5338호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2
- 전라북도 조례 제5339호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전라북도 조례 제5340호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10
- 전라북도 조례 제5341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전라북도 조례 제5342호 전라북도 고문번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전라북도 조례 제5343호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18
- 전라북도 조례 제5344호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1
- 전라북도 조례 제5345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3
- 전라북도 조례 제5346호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25
- 전라북도 조례 제5347호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27
- 전라북도 조례 제5348호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전라북도 조례 제5349호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3
- 전라북도 조례 제5350호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37
- 전라북도 조례 제5351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전라북도 조례 제5352호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3
- 전라북도 조례 제5353호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46
- 전라북도 조례 제5354호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 전라북도 조례 제5355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전라북도 조례 제5356호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3
- 전라북도 조례 제5357호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 전라북도 조례 제5358호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56
- 전라북도 조례 제5359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8
- 전라북도 조례 제5360호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63
- 전라북도 조례 제5361호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65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94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 73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58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59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15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58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121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59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항 공고 122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600호 사단법인 설립 허가 등록 공고 123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60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 공시송달 공고 124

지시사항

- 2023. 9. 22.(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126

시 군

- 정읍시 공고 제2023-1442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129
- 고창군 고시 제2023-140호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49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37호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과거 1년 이상 직장”을 “직장”으로, “거주한”을 “거주했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2년이상 활동한”을 “활동했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38호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구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5조제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 또는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전라북도의회 의원
5.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회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 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 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

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장은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북도 소속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8조(전라북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전라북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전라북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전라북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경비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및 「전라북도 자치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39호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시의”를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라북도의 지방소비세액”을 “도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으로, “전라북도의 인구”를 “도의 인구수”로, “인구를”을 “인구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당해 시·군의 인구수”를 “해당 시·군의 인구수”로, “당해 시·군의 도세”를 “해당 시·군의 도세”로, “당해 시·군”을 “해당 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을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4(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제1항 본문 중 “일반조정교부의 총액을 당해”를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시·군의”를 “해당 시·군의”로, “당해 시·군에”를 “해당 시·군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조정교부금의 시정 등)”을 “(조정교부금의 반환·감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감액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할 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중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배분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5. 시장·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 중 “받고 당해”를 “받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 공개) 도지사는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시·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40호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국비 보조사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국비보조사업도”를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로, “필요성 인정시 심의 할 수 있다”를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없을때”를 “없을 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있을시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를 “있을 때 분기마다 실시하되”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7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0조의2를 제13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1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사업안을”을 “용역의 과업지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호”를 “제4호”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0조의2)제1항 중 “용역시행부서”를 “용역 시행부서”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용역상황의 점검)”을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용역진행상황”을 “용역 진행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역계획서상”을 “용역 과업지시서상”으로,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를 “연구자에게”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1조의2)의 제목 “(용역 결과의 평가)”를 “(용역결과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되, 용역 결과물과 연구자에 대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단순 반복적인 기술·전산·설문조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6조(중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용역계약”을 “제15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용역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등의 공개대상은 제3조제2항제1호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회의시마다”를 “회의 때”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8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용역 결과물 평가결과서

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용역실무자				
연구방식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경쟁입찰()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주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 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물의 활용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5. 연구윤리 점검 결과 (위조, 변조, 표절 등)						
6. 연구자 점검 결과 (계약을 이행할 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구분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담당자		
확인	성명	(서명)	(서명)	(서명)		
평가	개최일자		장소			
보고회	참석자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41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단서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16항 중 “휴가”를 “휴가와 신병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본문 중 “만 4세”를 “4세”로 한다.

제23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전라북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회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연가가산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 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연가가산 일수
 -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가산을 하지 않는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42호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20만원”을 “월30만원”으로, “월10만원이내
의 금액을 추가하여”를 “건당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최대 50만원까
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건”을 “5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43호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업무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6개월 이내의 단순한 물품 전시 또는 행사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협약의 대상과 협력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반기별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도지사는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도의회 보고 등)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지체 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투자유치 협약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4. 도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를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도의회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결과, 개선방안을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 및 협약을 취소,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44호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도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1. 모범 다자녀가정
-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
- 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45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 권역과 인접한 3개 시·군의 광역 협력 사무를 처리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만금 권역과 인접한 3개 시·군의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 사무 또는 도 사무 위임·이관 및 시·군 공동 추진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인력의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필요한 사무 조직 구성을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전까지 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방자치 및 자치행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사람

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라북도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정책 포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관계전문가·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46호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전라북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마약류 상품명”이란 상품의 명칭과 마케팅 등에 마약류 용어를 표시 또는 사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이하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라 한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개선사업) 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47호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 외에도 가족, 자기개발, 여가문화 생활 등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전라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
-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이 운영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 4.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공간 등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성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을 위하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일·생활 균형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도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 및 일·생활 균형 시책이 확대되도록 노동자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생활 균형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2.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2.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시설 조성
2.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④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확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기업 등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 지원 우대
2.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일·생활 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생활 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사업
2. 일·생활 균형을 위한 도민의 교육·활동 지원 및 홍보
3.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정보 관리
4.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5. 일·생활 균형 마을 조성에 관한 정책 추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지역의 관계 공공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규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48호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

2.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 :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화재안전시설)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49호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북도 일반회계 전입금
2. 전라북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6.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7.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8.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9.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 환경단체 활동 지원

5. 기후위기 대응 시책 관련 우수기관 포상금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환경 업무 담당국장
- 2. 기금분임운용관: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과장
- 3. 기금출납원: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팀장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기금의 조성 및 집행 현황
- 2.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
-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대응기금 담당과장과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

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3. 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

4. 그 밖에 기타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라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이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4.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의

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2024년 1월 1일에 폐지한다.

제3조(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계정으로 승계한다.

②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전까지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50호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상가건물의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5.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3. 특화거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활성화구역 및 특화거리,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상권에 적용한다.

제2장 상가건물 상생협력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으로 활성화된 지역 내 상가에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그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권장 시 법 제10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3장 특화거리 육성

제9조(특화거리 지정·변경 등) ① 시장·군수는 특화거리를 지정·폐지·변경·축소·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특화거리를 지정·폐지·변경·축소·확대하고자 할 경우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와 활성화구역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2조의 전라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의 특화거리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 3.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사업
- 4.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신청) 제10조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하여야 한다.

-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3.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등

제4장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상생협력상가 지정·지원 및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에 관한 사항
- 2.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한다.

-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
- 2.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 3.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그 외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의 누설 금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화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지정한 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로 본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51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있으며,”를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보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적경제기업 :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셜벤처기업 :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소셜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52호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국방중소·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민·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와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

2. 방위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
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 방안
4. 방위산업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5.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 사업
4. 민·군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보호 협력체계 구축사업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전라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2.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
4. 산·학·연·관·군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

하여 전라북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벤처기업 임원
2.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53호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토종농작물”을 “다양한 토종농작물”로, “전통 농작물”을 “토종농작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토종농작물”을 각각 “다양한 토종농작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존·육성계획 수립)”을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존과”를 “보존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4호) 중 “토종농작물”을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4.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토종농작물의 학교급식·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등에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6. 토종마을 및 토종채종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을 “(민관정책협의회의 설치·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존·육성”을 “보존 및 육성”으로, “구성·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

5. 토종마을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협회의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종자사업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종자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 전문가

2. 종자 관련 농업인 대표

3.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7조, 제12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회의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협의회 의안 제출)”을 “(협의회 안건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지원)”을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를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을”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토종농작물 영농계획 제출)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당 토종농작물의 파종 5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① 농업인 등은 제13조의 영농계획에 따라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5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및 지원기준) 지급대상은 제13조에 따라 토종농작물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4조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이며, 지원기준과 지급단가는 민관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원확보) 도지사는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토종마을 육성) 도지사는 토종마을의 소득향상과 토종농작물의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토종마을의 특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54호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전라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폭염에 대한”을 “폭염·한파에 대한”으로, “폭염에 따른”을 “폭염·한파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더위 쉼터”란 폭염”을 ““무더위·한파쉼터”란 폭염·한파”로, “무더위를”을 “무더위·한파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폭염취약계층”이란”을 ““폭염·한파취약계층”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폭염”을 “폭염·한파”로 한다.

1의2. “한파”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하강하여 섭씨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섭씨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폭염으”를 “폭염과 한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폭염으”를 “폭염·한파”로, “폭염행동요령”을 “폭염·한파 행동요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폭염”을 “폭염·한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폭염특보”를 “폭염·한파 특보”로, “폭염행동요령”을 “폭염·한파 행동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폭염”을 “폭염·한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폭염대책을”을 “폭염·한파 대책을”로, “폭염대응”을 “폭염·한파 대응”으로, “폭염대책기간”을 “폭염·한파 대책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폭염”을 각각 “폭염·한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무더위쉼터”를 “무더위·한파 쉼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폭염저감시설”을 “폭염·한파 저감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폭염취약계층”을 “폭염·한파 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폭염”을 “폭염·한파”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폭염대응”을 “폭염·한파대응”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을“(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폭염”을 각각 “폭염·한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염취약계층”을 “폭염·한파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폭염 특보”를 “폭염·한파 특보”로, “폭염취약계층”을 “폭염·한파취약계층”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폭염취약계층 지원)”을“(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염취약계층”을 “폭염·한파취약계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을 “냉·난방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절기”를 “동·하절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무더위쉼터 지원)”을“(무더위·한파 쉼터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더위쉼터”를 “무더위·한파 쉼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을“(폭염·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염을”을 “폭염·한파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폭염저감시설”을 “폭염·한파저감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폭염대응”을 “폭염·한파대응”으로 하며,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폭염저감시설”을 각각 “폭염·한파저감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폭염 안전교육 실시)”를“(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폭염피해”를 “폭염·한파피해”로 한다.

제13조 중 “폭염 피해를”을 “폭염·한파 피해를”로, “폭염 피해 예방”을 “폭염·한파 피해 예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폭염”을 “폭염·한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55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동주택 품질을”을 “공동주택의 품질을”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도에”를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으로, “시장·군수 또는 관계”를 “관계”로,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5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 4.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점검절차 및 자문) ① 도지사는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품질점검 대상에 대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반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품질점검반이 품질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및 품질점검반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를 포함하여 통보한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

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반에게 통보한다.

④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라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주요공정 이행에 따른 자문요청을 하는 경우 품질점검단으로 하여금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우수 시공·감리자 등 선정) ①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감리자(시공·감리업체 포함)와 품질점검 참여 위원 중에서 우수 시공·감리자 및 점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시공자 및 감리원과 해당 시공·감리업체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지사 김 관 영 인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56호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효율적인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 2. “맨발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보행로 계획 시 일정구간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을 맨발길로 조성하도록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
- 3. 맨발걷기 관련 홍보 및 행사 개최
-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관련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의 경우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57호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교육청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초등학생”을 “초·중·고등학생”으로 한다.

제3조 중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의 1학년 입학생을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거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은 2024년부터 적용하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58호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비급여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안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안전사고”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인정하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질병을 말한다.
3. “치료비”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에 필요한 경비로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를 겪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치료비 지원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학교안전사고로 유예 및 휴학 중인 학생 중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치료비의 지원범위) ① 치료비 지원범위는 수술비에 한하며(1인 사고당 300만 원 한도),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지원한다. 단, 비급여 항목 중 지원대상은 제9조에 따른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할 수 있다.

②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교육감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9조(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8조 1항에 따라 90일 이내 치료비 지급 심의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전라북도, 관계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59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교육복지사업계획)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교육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복지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방안
4.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욕구조사, 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교육복지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교육감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유치원 등 유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사업
4.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5.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6.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 학생에 대한 지원 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폭력 가해·피해로 인한 학생 지원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복지·문화·심리지원 사업
10.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라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9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 또는 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교육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교육복지사업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및 평가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교육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학부모 단체 임원, 시민사회 단체 임원, 교직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5조(교육복지사업의 평가)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복지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육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라북도지사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60호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졸업앨범비”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앨범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방법)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졸업앨범비의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금의 환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졸업앨범비를 지원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앨범비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4학
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 9.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 조례 제5361호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전라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

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교육청 소속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교육감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감사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 된다.

② 교육감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

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감사·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수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감사·조사·수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조사·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교육청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7조의3(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교육청이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

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교육감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교육감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포상 및 보상 등) ① 교육감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교육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육청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과건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교육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교육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증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3 - 294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23-57호(2023.3.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0월 4일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152,596㎡ → (변경) 151,776㎡ (감 82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고창 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따라 기업입주에 대비하여 직·주 근접 실현 및 종사자들이 고창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공간 마련
- 고창군 도시확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연계성에 근거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개발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구역지정 고시일 ~ 2025년 12월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52,596	감) 820	151,776	100.0		
주거 용지	소 계	81,436	증) 117	81,553	53.7	
	단독주택	6,130	증) 50	6,180	4.1	
	공동주택	69,187	감) 102	69,085	45.5	
	준주거(근생)	6,119	증) 169	6,288	4.1	
업무시설용지	8,181	감) 20	8,161	5.4		
커뮤니티시설	345	-	345	0.2		
도시 기반 시설	소 계	62,634	감) 917	61,717	40.7	
	도 로	25,428	감) 889	24,539	16.2	
	주 차 장	1,839	감) 3	1,836	1.2	
	공공청사	6,554	감) 16	6,538	4.3	
	공원·녹지	28,795	감) 9	28,786	19.0	
	공 원	21,889	감) 180	21,709	14.3	
	녹 지	6,906	증) 171	7,077	4.7	
	가스공급시설	18	-	18	0.0	
	저류시설	(3,000)	-	(3,000)	-	공원 내 중복결정

○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m ²)	용적률 (%)	전용면적 (m ²)	평균주택 규모(m ²)	호 수 (호)	인 구 (인)	비 고
기 정	합 계	75,317	-	-	1,217	2,556	
	단독주택	6,130	180이하	-	19	40	
	공동주택	69,187	-	-	1,198	2,516	
	임 대	13,843	200이하	60 이하	90	308	647
	분양1	25,262	200이하	60~85	115	367	771
	분양2	30,082	200이하	60~85	115	523	1,098
변 경	합 계	75,265	-	-	1,215	2,553	감) 2호 감) 3인
	단독주택	6,180	180이하	-	19	40	
	공동주택	69,085	-	-	1,196	2,513	
	임 대	13,818	200이하	60 이하	90	307	645
	분양1	25,016	200이하	60 ~ 85	115	363	763
	분양2	30,251	200이하	60 ~ 85	115	526	1,105

○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도로계획 총괄표_기정]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18	3,311 (1,891)	40,486 (25,428)	1	428	9,794	6	664 (465)	8,773 (6,958)	11	2,219 (998)	21,919 (8,676)
일반	계	14	3,248 (1,828)	40,174 (25,117)	1	428	9,794	6	664 (465)	8,773 (6,958)	7	2,156 (935)	21,607 (8,365)
	중로	9	2,744 (1,523)	36,423 (23,181)	1	428	9,794	4	404	6,219	4	1,912 (691)	20,410 (7,168)
	소로	5	504 (305)	3,751 (1,936)	-	-	-	2	260 (61)	2,554 (739)	3	244	1,197
보행자	계	4	63	311	-	-	-	-	-	-	4	63	311
	소로	4	63	311	-	-	-	-	-	-	4	63	311

※ ()는 구역내 해당사항임

[도로계획 총괄표_변경]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17	3,285 (1,661)	39,732 (24,539)	1	422	9,660	5	635 (436)	8,185 (6,075)	11	2,228 (803)	21,887 (8,804)
일반	계	13	3,222 (1,598)	39,422 (24,229)	1	422	9,660	5	635 (436)	8,185 (6,075)	7	2,165 (740)	21,577 (8,494)
	중로	8	2,709 (1,284)	35,701 (22,618)	1	422	9,660	3	375	5,631	4	1,912 (487)	20,410 (7,327)
	소로	5	513 (314)	3,721 (1,611)	-	-	-	2	260 (61)	2,554 (444)	3	253	1,167
보행자	계	4	63	310	-	-	-	-	-	-	4	63	310
	소로	4	63	310	-	-	-	-	-	-	4	63	310

※ ()는 구역내 해당사항임

나)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	1,839	감) 3	1,836	
변경	1	주차장	고창읍 덕산리 188-1 일원	933	증) 4	937	
변경	2	주차장	고창읍 덕산리 212 일원	906	감) 7	899	

2) 공간시설

가) 녹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개소	-	-	6,906	증) 171	7,077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고창읍 덕산리 118 일원	407	증) 1	408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고창읍 덕산리 119 일원	1,493	증) 5	1,498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고창읍 덕산리 128 일원	1,029	-	1,029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고창읍 덕산리 210 일원	3,977	증) 165	4,142	

나)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개소	-	-	21,889	감) 180	21,709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고창읍 덕산리 176 일원	11,992	감) 118	11,874	
변경	1	공원	소공원	고창읍 덕산리 102 일원	8,312	감) 6	8,306	
변경	2	공원	소공원	고창읍 덕산리 208-3 일원	1,585	감) 56	1,529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가스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가스공급설비	고창읍 덕산리 171-6 일원	18	-	18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	고창읍 덕산리 189-5 일원	6,554	감) 16	6,538	

5) 방제시설

가) 저류시설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고창읍 덕산리 102 일원	3,000	-	3,000	소공원1 중복결정

6) 기타 기반시설

가) 상수도(변경)

구 분	상수공급용량(m ³ /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일최대급수량	1,049	감) 1	1,048	

나) 하수도(변경)

구 분	오수처리용량(m ³ /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일최대오수량	961	감) 1	960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063-280-4496)
고창군 건설도시과(☎ 063-560-2563)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처(☎ 063-280-7534)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1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개발구역(변경)
 - 1)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152,596	감) 820	151,776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고창 덕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창읍 덕산리 209-1번지 일원	152,596	감) 820	151,776	

붙임1. 토지의 세목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합계		기정			196,955	152,596						
		변경			151,776	151,776						
1	변경 없음	덕산리	16	답	1,792	1,792	한○교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2	변경 없음	덕산리	17-1	전	374	374	염○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586 은천마을제일아파트 ○○				
3	기정	덕산리	17-3	전	873	842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7-26	전	841	841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4	기정	덕산리	17-18	답	227	109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7-27	답	112	112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5	기정	덕산리	17-19	전	62	14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7-28	전	18	18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6	변경 없음	덕산리	34-5	답	23	23	유○순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2길 ○○				
7	변경 없음	덕산리	34-6	답	2,658	2,658	박○원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8	변경 없음	덕산리	34-7	답	53	53	유○순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2길 ○○				
9	변경 없음	덕산리	34-8	답	118	118	고창군					
10	변경 없음	덕산리	34-9	답	24	24	고창군					
11	기정	덕산리	100	답	1,031	37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00-11	답	29	29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2	기정	덕산리	100-3	답	31	25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00-12	답	26	26	고창군					
13	기정	덕산리	100-7	답	1,500	1	국(국토 해양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00-13	답	2	2	국(국토 해양부)					
14	기정	덕산리	100-9	도	165	20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00-14	도	22	22	고창군					
15	변경 없음	덕산리	101-3	잡	1,219	1,219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근저당	고창 ○○ 조합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6	변경 없음	덕산리	101-5	답	106	106	고창군					
17	변경 없음	덕산리	101-6	답	16	16	고창군					
18	변경 없음	덕산리	102	답	1,628	1,628	김○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107, ○○				
19	변경 없음	덕산리	102-1	답	67	67	고창군					
20	기정	덕산리	103-1	전	90	-	국(국토 해양부)					신규
	변경	덕산리	103-9	전	1	1	국(국토 해양부)					
21	기정	덕산리	111-3	도	73	19	국(건설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11-4	도	19	19	국(건설부)					
22	기정	덕산리	113-2	대	43	42	박○성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13-3	대	33	33	박○성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				
23	변경 없음	덕산리	115	잡	675	675	박○숙 (합유자) 송○표 (합유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24	변경 없음	덕산리	115-4	도	69	69	고창군						
25	기정	덕산리	115-12	잡	18	17	국(건설 교통부)					지 적 분 할	
	변경	덕산리	115-42	잡	17	17	국(건설 교통부)						
26	변경 없음	덕산리	115-32	잡	31	31	국(국토 교통부)						
27	변경 없음	덕산리	116	창	661	661	박○숙 (합유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한국 ○○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송○표 (합유자)		지상권	한국 ○○ 주식 회사			
28	변경 없음	덕산리	116-1	대	378	378	박○숙 (합유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한국 ○○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송○표 (합유자)		지상권	한국 ○○ 주식 회사			
29	변경 없음	덕산리	116-2	도	23	23	국(건설부)						
30	기정	덕산리	116-3	도	417	24	국(건설부)					지 적 분 할	
	변경	덕산리	116-6	도	28	28	국(건설부)						
31	기정	덕산리	116-4	도	60	27	국(건설 교통부)					지 적 분 할	
	변경	덕산리	116-7	도	19	19	국(건설 교통부)						
32	변경 없음	덕산리	116-5	대	68	68	국(국토 교통부)						
33	변경 없음	덕산리	117-2	도	3	3	고창군						
34	변경 없음	덕산리	118	전	1,166	1,166	박○성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신림로 ○○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35	기정	덕산리	118-2	전	14	3	국(국토 교통부)					지 적 분 할
	변경	덕산리	118-3	전	3	3	국(국토 교통부)					
36	변경 없음	덕산리	119-2	도	182	182	고창군					
37	변경 없음	덕산리	119-3	답	3,354	3,354	정○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344번길 ○○	근저당	고창 ○○ 조합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	
38	변경 없음	덕산리	119-4	답	10	10	고창군					
39	변경 없음	덕산리	119-5	답	23	23	고창군					
40	변경 없음	덕산리	119-6	도	209	209	고창군					
41	변경 없음	덕산리	120	잡	3,850	3,850	유한회사 디○ (1/2) 유한회사 가○(1/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근저당 지상권	홍덕 ○○ 조합 홍덕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홍덕면 홍덕초등길 ○○	
42	변경 없음	덕산리	120-2	답	44	44	고창군					
43	변경 없음	덕산리	120-3	도	116	116	고창군					
44	변경 없음	덕산리	121-2	답	120	120	고창군					
45	변경 없음	덕산리	122	답	2,090	2,090	김○열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46	변경 없음	덕산리	122-1	답	12	12	고창군					
47	변경 없음	덕산리	123	답	2,549	2,549	김○열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48	변경 없음	덕산리	124	답	1,089	1,089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				
49	변경 없음	덕산리	124-1	답	151	151	고창군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50	기정	덕산리	125	답	2,083	464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25-2	답	452	452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				
51	변경 없음	덕산리	125-1	답	3	3	고창군					
52	기정	덕산리	126	답	2,423	192	성○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104,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26-3	답	183	183	성○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104, ○○				
53	변경 없음	덕산리	126-2	답	33	33	고창군					
54	기정	덕산리	128	답	7,289	322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	근저당	고창 ○○ 조합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28-1	답	308	308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	근저당	고창 ○○ 조합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55	기정	덕산리	129	답	1,616	1,091	김○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29-4	답	1,071	1,071	김○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56	기정	덕산리	129-1	답	1,686	1,033	변○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29-5	답	1,033	1,033	변○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57	변경 없음	덕산리	129-2	답	272	272	고창군					
58	변경 없음	덕산리	129-3	답	83	83	고창군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59	기정	덕산리	134-2	도	10	8	김○이	정읍시 수성동 948-9 두산빌라 ○○	근저당	정읍 ○○ 급고	정읍시 수성동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34-4	도	6	6	김○이	정읍시 수성동 948-9 두산빌라 ○○	근저당	정읍 ○○ 급고	정읍시 수성동 ○○	
60	변경 없음	덕산리	135-1	답	4,878	4,878	유○종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근저당	고창 ○○ 조합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	
61	변경 없음	덕산리	135-2	도	132	132	김○수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				
62	변경 없음	덕산리	135-3	도	33	33	고창군					
63	변경 없음	덕산리	135-4	도	104	104	고창군					
64	기정	덕산리	136-3	도	106	3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36-6	도	12	12	고창군					
65	기정	덕산리	136-4	도	162	116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36-8	도	2	2	고창군					
	변경	덕산리	136-9	도	105	105	고창군					
66	기정	덕산리	136-5	대	355	5	김○순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36-10	대	2	2	김○순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				
67	기정	덕산리	138	답	956	44	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38-3	답	34	34	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				
68	변경 없음	덕산리	138-1	도	6	6	고창군					
69	기정	덕산리	140-2	도	99	14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40-3	도	18	18	고창군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70	변경 없음	덕산리	166	답	3,988	3,988	김○선 (1,944/3,98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동3길 14, ○○				
							김○경 (1,944/3,988)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9길 8, ○○				
71	변경 없음	덕산리	166-1	전	334	334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123				
72	변경 없음	덕산리	166-2	전	50	50	김○삼 (10/50)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				
							김○만 (10/50)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				
							김○성 (10/50)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				
							김○열 (10/50)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				
							김○수 (10/50)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				
73	변경 없음	덕산리	166-19	답	26	26	고창군					
74	변경 없음	덕산리	166-20	답	26	26	고창군					
75	변경 없음	덕산리	167	답	60	60	오○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76	변경 없음	덕산리	167-1	답	135	135	오○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77	변경 없음	덕산리	168	답	73	73	유○종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78	변경 없음	덕산리	169	전	50	50	류○선					
79	변경 없음	덕산리	170	전	165	165	유○종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80	변경 없음	덕산리	171	답	1,306	1,306	유○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가압류	한국 ○○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81	변경 없음	덕산리	171-1	도	169	169	박○기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82	변경 없음	덕산리	171-2	전	60	60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83	변경 없음	덕산리	171-3	전	3,402	3,402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84	변경 없음	덕산리	171-6	임	1,463	1,463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85	변경 없음	덕산리	171-7	임	1,888	1,888	강○옥 (377.6/1,88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				
							강○자 (377.6/1,888)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140, ○○				
							강○심 (377.6/1,88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29번길 21, ○○				
							강○숙 (377.6/1,888)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72, ○○				
							강○원 (377.6/1,88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6번길 55, ○○				
86	변경 없음	덕산리	172	답	1,342	1,342	오○녀 (671/1,34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지상권	고창 부안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정○선 (671/1,34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근저당	고창 부안 ○○ 조합		
87	변경 없음	덕산리	172-1	목	1,995	1,995	박○영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88	변경 없음	덕산리	172-2	전	621	621	윤○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89	변경 없음	덕산리	172-3	대	231	231	오○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83, ○○				
90	변경 없음	덕산리	172-4	답	1,520	1,520	안○례 (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2길 10 ○○				
							엄○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엄○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91	변경 없음	덕산리	172-5	답	162	162	김○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80 ○○				
92	변경 없음	덕산리	172-6	전	2,716	2,716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93	변경 없음	덕산리	172-7	답	17	17	고창군					
94	변경 없음	덕산리	173	답	78	78	안○레 (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2길 10 ○○				
							엄○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엄○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95	변경 없음	덕산리	173-1	답	24	24	고창군					
96	변경 없음	덕산리	174	전	160	160	정○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97	변경 없음	덕산리	174-1	전	207	207	고창군					
98	변경 없음	덕산리	175	답	3,666	3,666	김○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 107 ○○				
99	변경 없음	덕산리	176	답	3,901	3,901	유○중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100	변경 없음	덕산리	177-1	답	937	937	윤○레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01	변경 없음	덕산리	177-2	답	466	466	윤○레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02	변경 없음	덕산리	177-3	답	203	203	고창군					
103	변경 없음	덕산리	178	전	642	642	윤○레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04	변경 없음	덕산리	178-1	전	198	198	고창군					
105	변경 없음	덕산리	179	답	3,977	3,977	이○미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06	변경 없음	덕산리	180	답	3,603	3,603	유○정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107	기정	덕산리	180-1	답	3,755	3,669	남원윤씨 ○○중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지 적 분 할
	변경	덕산리	180-2	답	3,686	3,686	남원윤씨 ○○중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108	변경 없음	덕산리	181-1	답	2,249	2,249	정○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근저당	고창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	
109	변경 없음	덕산리	181-2	도	40	40	고창군					
110	변경 없음	덕산리	181-3	도	13	13	고창군					
111	변경 없음	덕산리	181-4	도	43	43	고창군					
112	변경 없음	덕산리	181-5	도	25	25	고창군					
113	변경 없음	덕산리	182-1	잡	1,583	1,583	김○호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형계동길 ○○	근저당	양○경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	
114	변경 없음	덕산리	182-2	도	139	139	김○수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				
115	변경 없음	덕산리	182-3	도	96	96	고창군					
116	변경 없음	덕산리	182-4	도	248	248	고창군					
117	변경 없음	덕산리	183-2	도	60	60	고창군					
118	변경 없음	덕산리	184	답	238	238	이○옥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				
119	변경 없음	덕산리	184-1	대	588	588	이○옥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				
120	변경 없음	덕산리	184-2	답	224	224	고창군					
121	변경 없음	덕산리	184-3	답	49	49	고창군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122	변경 없음	덕산리	184-4	도	34	34	고창군					
123	변경 없음	덕산리	185	전	598	598	이○미	읍내리 518-5 덕산진흥하이츠○○				
124	변경 없음	덕산리	185-1	전	41	41	고창군					
125	변경 없음	덕산리	185-2	전	41	41	고창군					
126	변경 없음	덕산리	185-3	전	497	497	고창군					
127	변경 없음	덕산리	186	답	4,479	4,479	이○희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낙산로 ○○				
128	변경 없음	덕산리	187	전	217	217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129	변경 없음	덕산리	187-1	전	24	24	고창군					
130	변경 없음	덕산리	188-1	전	775	775	김○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				
131	변경 없음	덕산리	188-2	도	10	10	고창군					
132	변경 없음	덕산리	188-3	전	237	237	고창군					
133	변경 없음	덕산리	188-4	전	9	9	고창군					
134	변경 없음	덕산리	189-3	도	126	126	고창군					
135	변경 없음	덕산리	189-5	대	4,713	4,713	박○열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애향갯벌로 ○○	근저당	주식 회사 ○○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	
136	변경 없음	덕산리	189-6	대	8,201	8,201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137	변경 없음	덕산리	189-10	대	637	637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138	변경 없음	덕산리	189-11	답	2,245	2,245	김○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95, 동신아파트 ○○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139	기정	덕산리	189-12	도	46	16	국(건설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89-50	도	20	20	국(건설부)					
140	변경 없음	덕산리	189-24	전	253	253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141	기정	덕산리	189-31	도	312	11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89-51	도	20	20	고창군					
142	기정	덕산리	189-34	도	50	13	국(국토 교통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89-52	도	19	19	국(국토 교통부)					
143	기정	덕산리	189-35	도	100	4	국(건설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89-53	도	5	5	국(건설부)					
144	변경 없음	덕산리	189-39	도	1	1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145	변경 없음	덕산리	189-40	도	163	163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146	변경 없음	덕산리	189-42	도	153	153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147	변경 없음	덕산리	189-43	임	92	92	허○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3길 22 ○○				
148	변경 없음	덕산리	189-44	도	120	120	김○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근저당 압류	이○석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	
149	기정	덕산리	189-45	전	256	3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89-54	전	6	6	고창군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지목			성명	주소	권리명	성명	주소	
150	기정	덕산리	189-46	대	757	40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89-55	대	60	60	고창군					
151	기정	덕산리	189-47	답	185	19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189-56	답	31	31	고창군					
152	변경 없음	덕산리	189-49	답	258	258	고창군					
153	변경 없음	덕산리	207-2	답	503	503	조○창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근저당	고창 ○○ 금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이○철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지상권	고창 ○○ 금고		
154	변경 없음	덕산리	207-3	대	500	500	조○창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근저당	고창 ○○ 금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이○철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지상권	고창 ○○ 금고		
155	기정	덕산리	207-4	도	93	52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207-10	도	56	56	고창군					
156	기정	덕산리	207-5	도	86	46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207-11	도	52	52	고창군					
157	기정	덕산리	207-6	도	882	75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207-12	도	87	87	고창군					
158	변경 없음	덕산리	207-7	도	92	92	송○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송○창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송○식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59	변경 없음	덕산리	207-8	도	72	72	송○환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송○창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송○식 (1/3)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60	변경 없음	덕산리	207-9	전	608	608	조○창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근저당	고창 ○○ 금고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이○철 (1/2)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지상권	고창 ○○ 금고		
161	변경 없음	덕산리	208-1	전	3,643	3,643	김○수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62	변경 없음	덕산리	208-3	전	1,552	1,552	박○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63	변경 없음	덕산리	208-4	대	91	91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주식 회사 ○○ 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지상권	주식 회사 ○○ 은행		
164	기정	덕산리	208-5	도	344	234	고창군					지 적 분 할
	변경	덕산리	208-13	도	258	258	고창군					
165	변경 없음	덕산리	208-6	도	108	108	고창군					
166	변경 없음	덕산리	208-7	도	471	471	송○자 (1/2)	서울시 중구 황학동 ○○				
							송○환 (1/2)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67	변경 없음	덕산리	208-8	도	72	72	김○수	광주시 동구 산수동 ○○				
168	변경 없음	덕산리	208-9	도	96	96	김○수	광주시 동구 산수동 ○○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69	변경 없음	덕산리	208-10	대	649	649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근저당	고창군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70	변경 없음	덕산리	208-11	전	1,237	1,237	박○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				
171	변경 없음	덕산리	208-12	전	742	742	조○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근저당 지상권	고창군 ○○ 조합 고창군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72	변경 없음	덕산리	209	답	2,392	2,392	최○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73	기정	덕산리	209-1	대	5,513	5,507	고창군					지 적 분 할
	변경	덕산리	209-7	대	5,507	5,507	고창군					
174	변경 없음	덕산리	209-2	도	48	48	최○규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75	변경 없음	덕산리	209-3	전	1,101	1,101	염○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87 아중롯데아파트 ○○				
176	기정	덕산리	209-4	학	409	246	염○영 외 1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87 아중롯데아파트 ○○				지 적 분 할
	변경	덕산리	209-8	학	241	241	염○영 외 1인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87 아중롯데아파트 ○○				
177	변경 없음	덕산리	209-6	묘	542	542	고창군					
178	변경 없음	덕산리	210	대	658	658	안○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증거리당산로 ○○	근저당	고창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	
179	변경 없음	덕산리	210-1	도	207	207	서○정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80	변경 없음	덕산리	210-2	도	393	393	국(기획 재정부)					
181	변경 없음	덕산리	210-3	전	2,645	2,645	유○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남구2길 ○○	근저당	○○ 은행 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182	변경 없음	덕산리	210-4	전	1,531	1,531	유○열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8,659				
183	변경 없음	덕산리	210-5	임	182	182	엄○섭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184	변경 없음	덕산리	210-6	임	337	337	국(기획 재정부)					
185	변경 없음	덕산리	210-7	전	1,855	1,855	김○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80 ○○				
186	변경 없음	덕산리	210-8	임	79	79	변○광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87	변경 없음	덕산리	210-11	전	18	18	서○정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				
188	변경 없음	덕산리	210-14	전	102	102	고창군					
189	변경 없음	덕산리	210-15	대	40	40	고창군					
190	변경 없음	덕산리	210-16	답	1,927	1,927	한○교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91	변경 없음	덕산리	211-1	대	1,725	1,725	박○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지상권	고창 부안 ○○ 조합 고창 부안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192	변경 없음	덕산리	212	대	1,085	1,085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지상권	주식 회사 ○○ 은행 주식 회사 ○○ 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193	변경 없음	덕산리	212-1	도	4	4	고창군					
194	변경 없음	덕산리	212-2	전	196	196	고창군					
195	변경 없음	덕산리	212-3	대	460	460	박○순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주식 회사 ○○ 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196	변경 없음	덕산리	213	답	86	86	김○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30-9 ○○				
197	변경 없음	덕산리	214	대	314	314	박○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근저당	고창 ○○ 조합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198	기정	덕산리	214-3	답	19	5	이○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제척
	변경	덕산리	214-3	답	-	-	이○훈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				
199	기정	덕산리	215-2	답	110	109	박○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215-5	답	109	109	박○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				
200	기정	덕산리	215-3	도	201	95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215-6	도	102	102	고창군					
201	변경 없음	덕산리	218-2	답	36	36	박○인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202	기정	덕산리	218-3	도	162	1	고창군					제척
	변경	덕산리	218-3	도	-	-	고창군					
203	기정	덕산리	500-2	구	3,672	117	국(농림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500-21	구	116	116	국(농림부)					
204	기정	덕산리	501	구	8,655	3,012	국(농림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501-11	구	3,032	3,032	국(농림부)					
205	기정	덕산리	505	도	350	265	국(건설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505-1	도	264	264	국(건설부)					
206	변경 없음	덕산리	507	도	43	43	국(건설부)					
207	변경 없음	덕산리	508	도	93	93	국(건설부)					
208	변경 없음	덕산리	509-1	도	101	101	국(건설부)					
209	기정	덕산리	509-4	도	10	3	국(건설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509-5	도	5	5	국(건설부)					
210	변경 없음	덕산리	510	도	228	228	국(건설부)					
211	기정	덕산리	511	구	1,910	1,874	국(농림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511-3	구	1,876	1,876	국(농림부)					
212	기정	덕산리	511-1	구	268	21	국(농림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511-4	구	21	21	국(농림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213	기정	덕산리	512	도	2,886	3	국(건설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512-1	도	3	3	국(건설부)					
214	기정	덕산리	산37-2	학	397	130	국(기획 재정부)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산37-4	학	125	125	국(기획 재정부)					
215	기정	덕산리	산39-6	도	2,162	1,425	고창군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산39-19	도	9	9	고창군					
	변경	덕산리	산39-20	도	660	660	고창군					
216	변경 없음	덕산리	산40-1	임	893	893	김○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30-9 ○○				
217	변경 없음	덕산리	산40-4	임	209	209	염○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218	기정	덕산리	산47-2	임	7,177	835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산47-8	임	714	714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219	기정	덕산리	산47-5	유	198	-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신규
	변경	덕산리	산47-9	유	49	49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220	기정	덕산리	산48-2	임	4,760	453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지적 분할
	변경	덕산리	산48-3	임	406	406	남원윤씨 ○○종중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 2023-58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신설, 소방 중앙조직과의 업무 연계성 및 현장중심 기능 보강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구

- 1) 본 청 : 3실·9국·1단·1본부 66관·과·단(△관 +1단)
- 2) 의 회 : 4담당관 9전문위원(변동없음)
- 3) 직 속 : 3원 15서 → 3원 15서 1관(119안전체험관)
- 4) 사업소 : 11사업소(변동없음)
- 5) 합의제행정기관 : 1국 2과 → 2국 2과(감사위원회 1사무국)

나. 정 원

- 1)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 및 정원변동 내역(안 제81조)
 - 가) 정원의 총수 : 5,502명(변동없음)
 - 나) 정원변동 내역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 고
정원의 총수	5,502명	5,502명	-	
집행기관의 정원	1,901명	1,862명	△39명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56명	3,456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123명	123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22명	61명	39명	

2)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7)

- 가) 정무직 총계 : 3명 → 4명(증 1명)
- 나) 별정직 총계 : 14명 → 14명(변동없음)
- 1급 상당 : 1명 → 1명(변동없음)
 - 4급 상당 : 7명 → 7명(변동없음)
 - 5급 상당 이하 : 6명 → 6명(변동없음)
- 다) 일반직공무원 총계 : 1,804명 → 1,803명(△ 1명)
- 2급·3급 : 3명 → 3명(변동없음)
 - 3급 : 11명 → 11명(변동없음)
 - 3급·4급 : 2명 → 2명(변동없음)
 - 4급 : 80명 → 80명(변동없음)
 - 5급 이하 소계 : 1,699명 → 1,698명(△ 1명)
 - 전문경력관 소계 : 9명 → 9명(변동없음)
- 라) 연구직 총계 : 199명 → 199명(변동없음)
- 연구관 : 38명 → 38명(변동없음)
 - 연구사 : 161명 → 161명(변동없음)
- 마) 지도직 총계 : 26명 → 26명(변동없음)
- 지도관 : 7명 → 7명(변동없음)
 - 지도사 : 19명 → 19명(변동없음)
- 바) 소방공무원 총계 : 3,456명 → 3,456명(변동없음)
- 소방정 총계 : 20명 → 22명(증 2명)
 - 소방령 이하 : 3,436 → 3,434명(감 2명)

다. 주요 변경내용

1)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78조, 제79조, 제80조)

가)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신설(1사무국 6팀)

2) 현안 추진 대응을 위한 사무 조정 등 인력재배치(안 제6조, 제7조, 제9조)

가) 기업인력양성 총괄 추진 팀 신설

대학협력 → 대학협력(교육협력추진단), 인력양성(기업애로해소지원단)

나) 통계 분석 강화 추진 팀 신설

성과평가통계 → 성과평가, 통계분석(정책기획관실)

다) 잼버리 행사 종료에 따른 팀 폐지 : 잼버리지원, 잼버리시절

3) 담당 사무에 맞는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36조)

라) 복지여성보건국 사무 변경 : 출산지원 → 건강지원

마) 사업소 명칭 변경 : 서울본부 → 중앙협력본부

4) 소방본부 기구 설치 및 사무 조정(안 제14조)

가) 소방행정과 소방교육대 사무 신설

나) 방호예방과 → 예방안전과로 명칭 변경 및 사무 조정

다) 구조구급과 → 119대응과로 명칭 변경 및 사무 조정

라) 소방감찰과, 119종합상황실 → 사무 조정,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통신팀 이관

마) 특수대응단 신설 : 운영지원팀, 특수구조대 신설, 화학구조대, 119항공대 이관

5) 소방 직속기관 기구 설치 및 사무 조정(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가) 안전체험팀 이관 → 119안전체험관 신설

3. 정원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소요액(추정) : 정원증원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예산과, 여성청소년과

라. 입법예고 : 2023. 10. 4. ~ 2023. 10. 11.(7일간)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기업현장지원·규제혁신·마케팅통상지원”을 “기업현장지원·인력양성·규제혁신·마케팅통상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책개발·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통계”를 “정책개발·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통계분석”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행정·자치지원·고향사랑기부·민원·잼버리지원·잼버리시설”을 “행정·자치지원·고향사랑기부·민원”으로 한다.

제11조제6호 중 “건강정책·출산지원·정신건강·식품위생”을 “건강정책·건강지원·정신건강·식품위생”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소방행정지원·소방기획예산·소방장비관리·안전노사”를 “소방행정지원·소방기획예산·소방장비관리·안전노사·소방교육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호·예방지도·현장조사분석·소방안전조사·안전체험”을 “대응총괄·구조·구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조·구급·소방정보통신·소방항공대”를 “예방총괄·현장조사분석·소방안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감찰·소방법무·소방윤리교육”을 “소방감찰·소방청렴윤리·소방법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19특수대응단에 관한 사항

제18조 앞에 “제3장 직속기관”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제1절 농업기술원”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2절 인재개발원”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제3절 보건환경연구원”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4절 소방서”를 삭제한다.

제32조 앞에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32조 앞에 “제1절 전라북도서울본부”를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2절 농식품인력개발원”을 삭제한다.

제38조 앞에 “제3절 동물위생시험소”를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4절 수산기술연구소”를 삭제한다.

제48조 앞에 “제5절 산림환경연구소”를 삭제한다.

제51조 앞에 “제6절 도립국악원”을 삭제한다.

제54조 앞에 “제7절 도로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제57조 앞에 “제8절 독립미술관”을 삭제한다.

제60조 앞에 “제9절 독립여성중고등학교”를 삭제한다.

제62조의2 앞에 “제10절 어린이창의체험관”을 삭제한다.

제62조의5 앞에 “제11절 축산연구소”를 삭제한다.

제63조 앞에 “제5장 합의회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63조 앞에 “제1절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6조 앞에 “제6장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을 삭제한다.

제70조 앞에 “제7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를 삭제한다.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를 각각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로 하고,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로 하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까지를 각각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로 하고,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로 하며, 제56조의2를 제62조로 하고, 제35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로 하며, 제34조의2를 제39조로 하고, 제32조부터 제34조를 각각 제36조부터 제38조로 하며,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16조의2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농업기술원

제23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인재개발원

제2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보건환경연구원

제2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소방서

제3장제5절(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119안전체험관

제33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체험관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에 둔다.

제34조(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처·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
공
-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3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전라북도중앙협력본부

제36조(중전의 제32조)제1항 중 “전라북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를 “전라북도
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본부”를 “중앙협
력본부”로 한다.

제37조(중전의 제33조) 중 “서울본부”를 “중앙협력본부”로 한다.

제38조(중전의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본부장”을 “중앙협력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회·정당”을 “국회·정당·언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
호 중 “서울·세종지역”을 “수도권·세종지역”으로 한다.

제40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농식품인력개발원

제43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동물위생시험소

제4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수산기술연구소

제53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산림환경연구소

제5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도립국악원

제5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도로관리사업소

제63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도립미술관

제6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제6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어린이창의체험관

제7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축산연구소

제7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7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제75조(중전의 제63조)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자치경찰위원장”으로 한다.

제77조(중전의 제65조)제2항 중 “위원장”을 “자치경찰위원장”으로 한다.

제5장제2절(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78조(설치) ① 법 제12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과 감사위원을 둔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9조(소관사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명령의 재심의를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0조(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

제81조(중전의 제66조)제1호 중 “1,901명”을 “1,86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2명”을 “61명”으로 한다.

제8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별표 7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전라북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83조 관련)

직 급 별 \ 기 관 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5,502			-		
정무직 계	4			-		
도지사	1	1				
감사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별정직 계	14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7	1	6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일반직 계	1,803			-		
1급	-					-
2급·3급	3	2	1			
3급	11	10		1		-
3급·4급	2	2				
4급	80	59	5	5	10	1
5급 이하 소계	1,698			-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직 계	199			-		
연구관	38	2		32	4	
연구사	161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7			7		
지도사	19			-		
소방직 계	3,456			-		
소방정	22	6		16		
소방령 이하 계	3,434			-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u>기업현장지원·규제혁신·마케팅통상지원에 관한 사항</u></p> <p>3. ~ 5. (생 략)</p>	<p>제6조(기업유치지원실)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업현장지원·인력양성·규제혁신·마케팅통상지원</u>-----</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u>정책개발·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통계에 관한 사항</u></p> <p>3. ~ 7. (생 략)</p>	<p>제7조(기획조정실)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정책개발·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통계분석</u>----</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생 략)</p> <p>2. <u>행정·자치지원·고향사랑기부·민원·줍버리지원·줍버리시설에 관한 사항</u></p> <p>3.·4. (생 략)</p>	<p>제9조(자치행정국)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행정·자치지원·고향사랑기부·민원</u>----- -----</p> <p>3.·4. (현행과 같음)</p>
<p>제11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5. (생 략)</p> <p>6. <u>건강정책·출산지원·정신건강·식품위생에 관한 사항</u></p> <p>7. (생 략)</p>	<p>제11조(복지여성보건국)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건강정책·건강지원·정신건강·식품위생</u>----- --</p> <p>7. (현행과 같음)</p>
<p>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소방행정지원·소방기획예산·소방장비관리·안전노사에 관한 사항</u></p> <p>2. <u>방호·예방지도·현장조사분석·소방안전조사·안전체현에 관한 사항</u></p>	<p>제14조(소방본부) ----- -----.</p> <p>1. <u>소방행정지원·소방기획예산·소방장비관리·안전노사·소방교육대</u>-----</p> <p>2. <u>대응총괄·구조·구급</u>----- -----</p>

3. 구조·구급·소방정보통신·소방항공대에 관한 사항

4. 소방감찰·소방법무·소방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5. (생략)

<신설>

제16조의2·제17조 (생략)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원

<신설>

<신설>

제18조 ~ 제21조 (생략)

제2절 인재개발원

<신설>

제22조 ~ 제24조 (생략)

제3절 보건환경연구원

<신설>

제25조 ~ 제27조 (생략)

제4절 소방서

<신설>

제28조 ~ 제31조 (생략)

제4장 사업소

제1절 전라북도서울본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 예방총괄·현장조사분석·소방안전조사-----

--

4. 소방감찰·소방청렴윤리·소방법무-----

5. (현행과 같음)

6. 119특수대응단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8조 (현행 제16조의2 및 제17조와 같음)

<삭제>

<삭제>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원

제19조 ~ 제22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2절 인재개발원

제23조 ~ 제25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3절 보건환경연구원

제26조 ~ 제28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4절 소방서

제29조 ~ 제32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삭제>

<삭제>

제5절 119안전체험관

제33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체험관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에 둔다.

제34조(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처·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2.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32조(설치)</u>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서울 및 세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 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귀농귀촌인 유치, 국제간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전라북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u>를 설치한다.</p> <p>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p> <p><u>제33조(본부장)</u>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 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u>제34조(소관사무)</u> 서울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회·정당</u> 관련 업무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3. (생 략) 4. <u>서울·세종지역</u>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협조 5. 삭 제 6. ~ 12. (생 략) <p><u>제34조의2</u>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절 농식품인력개발원</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35조 ~ 제37조</u>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 동물위생시험소</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38조 ~ 제42조</u>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 수산기술연구소</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43조 ~ 제47조</u>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절 산림환경연구소</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한 홍보·전시</u></p> <p><u>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u></p> <p><u>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사업소</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절 전라북도중앙협력본부</u></p> <p><u>제36조(설치)</u> ① ----- ----- ----- ----- <u>전라북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u>-----.</p> <p>② <u>중앙협력본부</u>-----.</p> <p><u>제37조(본부장)</u> <u>중앙협력본부</u>----- ----- -----.</p> <p><u>제38조(소관사무)</u> <u>중앙협력본부장</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회·정당·언론</u> ----- 2. 3. (현행과 같음) 4. <u>수도권·세종지역</u> ----- 6. ~ 12. (현행과 같음) <p><u>제39조</u> (현행 제34조의2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절 농식품인력개발원</u></p> <p><u>제40조 ~ 제42조</u> (현행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 동물위생시험소</u></p> <p><u>제43조 ~ 제47조</u> (현행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 수산기술연구소</u></p> <p><u>제48조 ~ 제52조</u> (현행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절 산림환경연구소</u></p>
--	---

제48조 ~ 제50조 (생략)

제6절 도립국악원

<신설>

제51조 ~ 제53조 (생략)

제7절 도로관리사업소

<신설>

제54조 ~ 제56조의2 (생략)

제8절 도립미술관

<신설>

제57조 ~ 제59조 (생략)

제9절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신설>

제60조 ~ 제62조 (생략)

제10절 어린이창의체험관

<신설>

제62조의2 ~ 제62조의4 (생략)

제11절 축산연구소

<신설>

제62조의5 ~ 제62조의7 (생략)

제5장 합의회행정기관

제1절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신설>

제63조(설치) ① (생략)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64조 (생략)

제65조(사무기구) ① (생략)

제53조 ~ 제55조 (현행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6절 도립국악원

제56조 ~ 제58조 (현행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7절 도로관리사업소

제59조 ~ 제62조 (현행 제54조부터 제56조의2까지와 같음)

<삭제>

제8절 도립미술관

제63조 ~ 제65조 (현행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9절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제66조 ~ 제68조 (현행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10절 어린이창의체험관

제69조 ~ 제71조 (현행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와 같음)

<삭제>

제11절 축산연구소

제72조 ~ 제74조 (현행 제62조의5부터 제62조의7까지와 같음)

<삭제>

<삭제>

제5장 합의회행정기관

제1절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제75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라 한다)-----.

③ 자치경찰위원장-----.

제76조 (현행 제64조와 같음)

제77조(사무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략)

제6장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 자치경찰위원장-----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2절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제78조(설치) ① 법 제12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과 감사위원을 둔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9조(소관사무)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명령의 재심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0조(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66조</u>(정원의 총수)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502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1,901명</u></p> <p>2. 3. (생략)</p> <p>4. 합계행정기관의 정원: <u>22명</u></p> <p><u>제67조 ~ 제69조</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70조 · 제71조</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전라북도 공무원 정원</u></p> <p><u>제81조</u>(정원의 총수) ----- -----.</p> <p>1. ----- ----- <u>1,862명</u></p> <p>2. 3. (현행과 같음)</p> <p>4. ----- <u>61명</u></p> <p><u>제82조 ~ 제84조</u> (현행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u></p> <p><u>제85조 · 제86조</u> (현행 제70조 및 제71조와 같음)</p>
--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 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정책기획관실 강혜선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 2023-59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전문적 국악 교육 및 국악원의 나아갈 방향과 국악 대중화를 위한 비전 등 문화예술(국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 필요성 증대에 따른 개방형 직위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며, 어린이창의체험관은 개관(2019년) 후 전문성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의 목표가 소기 실현되어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지정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안 제47조, 제55조)

- 1) 독립국악원장 → 직위 신규 지정
- 2) 어린이창의체험관장 → 직위 지정 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예산과,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 2023. 10. 4. ~ 2023. 10. 11.(7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 10.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정책기획관 (전화 : 063-280-4238, FAX : 063-280-21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80-4238)

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립국악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관장) 어린이창의체험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원장) (생 략)</p> <p><신 설></p> <p>제55조(관장) ① 어린이장의체험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장의체험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제47조(원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국악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p> <p>제55조(관장) 어린이장의체험관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
 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추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정책기획관실 강혜선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58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0월 04일

1. 등록번호 : 제 2000-1-전라북도-137호
2. 단체명칭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
3. 소재지 : 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정읍시 2청사 내
4. 대표자
 - 성 명 : 김 인 덕
 - 생년월일 : 1965. 9. 10
5. 주된 사업
 - 농업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농생활기술 보급과 교류
 - 농림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와 상담
 - 농업인의 여론조사와 건전한 정책건의
6. 변경 내용 : 대표자 (당초) 오병오 → (변경) 김인덕
7. 허가(변경)일자 : 2023. 9. 21.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협력팀 김은혜(280-261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59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

지 사

2023년 10월 4일

1. 등록번호 : 2009-1-전라북도-27
2. 단체명칭 : 익산 북일노인대학
3. 대표자 : 이진
4. 소재지 : 익산시 익산대로 388번지
5. 주된 사업
- 노인대학 운영, 무료급식 등 노인여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최초등록일 : 2009. 3. 23.
7. 등록 말소 사항

등록말소일	등록 말소 이유
2023. 9. 20.	자진 신청 말소

전라북도 공고 제2023-1600호

사단법인 설립 허가 등록 공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10월 04일

1. 등록번호 : 제2023-42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3. 소재지 : 전북 김제시 동서로 34 (옥산동)
4. 대표자 : 서창배
5. 허가연월일 : 2023년 9월 22일
6. 설립목적 : 김제시 농어업·농어촌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농어업·농어촌계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협력팀 김은혜(280-261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60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에 따른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을 위한 청문 출석 통지를 해당업체에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전라북도지사

1. 공시송달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내 용	비 고
(주)세진건설 (이영*)	건축공사업 (14-0455)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금백로 903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처분의 내용 통지 및 청문 출석 요구	

2. 공시송달기간 : 2023. 10. 4. ~ 10. 20.(16일간)
3. 공시송달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청문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처분의 내용 통지 및 청문에 출석 요구
5. 청문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23. 10. 27.(금) 14:30
 - 나. 장 소 : 전북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실 사이
6. 출석시 지참자료 : 대표자 참석 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을 대리인 참석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7. 청문실시 통지와 관련한 내용은 [붙임] 청문실시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청 지역정책과(☎063-280-4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세진건설 (이영숙)	업종명	건축공사업(14-0455)			
	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금백로 90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 미제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6417(2022.12.21.)호, 전라북도 지역정책과-708(2023.1.17.), 2054(2023.2.14), 6613(2023.5.17.), 7252(2023.6.2), 10875(2023.8.18.)호 관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업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의견 제출처	기관명	전라북도	부서 명	지역정책 과	담당자	김형근
	의견 제출기한	주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번호	280-4455	
		전자우편	kimhg119@korea.kr		FAX번호	280-3419	
	청문 개요	청문 종결 전까지					
일시		2023. 10. 27.(금) 14:30					
청문장소		전북도청 청문장(1층) ※ 전북은행과 전시설 사이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전라북도 청문주재자					
	성명	장우석					

전라북도지사

< 청문 시 유의사항 >

- 귀 업체에서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라북도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 업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문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제1항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를 청문실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전북도청 지역정책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 063-280-4455
※ 당사자 진술내용이 작성된 청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열람 불가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9. 22.(금) 08:4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6 6	지방시대 4대 특구 대응계획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시대 4대 특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 세제·규정·재정 등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 인센티브 도입 ▶ (교육자유)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 제안하고 규제 완화·행재정 지원 ▶ (도시융합) 5대 광역 중심 첨단벤처 일지리와 주거·상업·문화 복합거점 조성 ▶ (문화) 문화도시 지정 프로그램 공간·콘텐츠 인력양성에 3년간 최대 200억원·도·시·별 지원 <p>○ 9.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 추진 및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므로,</p> <p>○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해당 실국 협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4대 특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정책기획관/ 협조 기업유치추진단 교육협력추진단 지역정책과 문화산업과)</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6 7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대응방안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 新디지털 제조혁신 MIDAS 2027 전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역량별 맞춤 지원) 기업 유형별 고도화 촉진 등 ▸ (제조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시 기반 제조데이터 활용 공유 촉진 등 ▸ (민간·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민간 중심의 정책협력 네트 워크 구축 등 ▸ (기술 공급기업 역량제고)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 등 <p>○ 9.18일 중기부에서 디지털 제조혁신기업 2만 5천개 육성을 위한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음.</p> <p>○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삼성 제조혁신 프로젝트’와 연계 해 사전컨설팅을 하는 등 지원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 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미래산업과)</p>
	당면·현안업무	<p>○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적극 참여 독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자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범 조성 과 도민 여론 확산을 위한 서명운 동에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기 바람, - 범도민 100만명 서명을 위해 구체적 추진방향을 정하고 시군과 협의 해 추진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특례정책과, 자치제도과 / 협조: 전 실국)</p> <hr/> <p>○ 세수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 감소에 따라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 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실국에서는 관행적 계속사업과 정책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 감히 정리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된 사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예산과 / 협조: 전 실국)</p> <hr/> <p>○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 신속납부 독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에서 사업 정산 후 미납부된 시도비반환금에 대해 올해 안에 추 경을 통해 반납될 수 있도록 시군별 추경 반영 사항을 점검해 신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세정과 / 협조: 전 실국)</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p>○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추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8일 추석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음. -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발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철저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자치행정과 / 협조: 전 실국)</p> <hr/> <p>○ 추석 연휴 청원 재충전 기회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청원들이 현안 해결에 노고가 많았으므로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전 실국)</p>

정읍시 공고 제2023-1442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위해 『관광진흥법』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의거 토지,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아래 내용을 보여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본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

2023년 10월 04일

1. 승인신청의 요지

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지정(변경)

- 1) 관광지명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 2) 위 치 :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 일원
- 3) 관광지 지정 면적 : 1,605,364.9m²

나.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 1) 면 적 : 1,605,364.9m²
- 2) 사 업 기 간 : 2005 ~ 2025. 12. 31.
- 3) 조성계획(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부지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605,364.9	-	1,605,364.9	100.0		
공공·편익 시설지구	128,624.6	증)1,521.0	130,145.6	8.1	• 비지터센터, 공용주차장, 광장, 도로(면적증가)	
숙박시설지구	116,284.1	-	116,284.1	7.2	• 하이랜드호텔, 메이플빌리지, 클라우드힐스, 엘리시움빌라	
상가시설지구	41,661.6	-	41,661.6	2.6	• F&C Mall, 수변상가, 단풍미인 한우관, 전통문화의 집, 주유소 및 상가	
관광휴양·오락 시설지구	소계	980,421.8	-	980,421.8	61.1	
	운동·오락시설	913,884.4	-	913,884.4	56.9	• 골프장지구
	휴양·문화시설	66,537.4	-	66,537.4	4.1	• 블루밍가든, 이벤트가든(명칭변경), 샌드가든, JB연수원, 산림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지구	338,372.8	감)1,521.0	336,851.8	21.0	• 녹지 및 기타(하천 등) (녹지 면적감소)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열람의 일시 : 2023. 09. 28. ~ 10. 11.(14일간)

나. 열람의 장소 : 정읍시청 관광과 민자유치팀

3. 관련도면 ----- 『계재생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관광과(063-539-5212)로 문의하십시오.

■ 관련조서1 -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연 면 적 (㎡)			층 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합 계	1,605,364.9	1,605,364.9	-	155,849.88	155,849.88	-	-	-			
공공 편의 시설	소 계	128,624.6	130,145.6	증)1,521.0	2,210.00	2,210.00	-	-	-		
	도 로	104,035.7	105,556.7	증)1,521.0	-	-	-	-	-		
	공용주차장1	11,262.6	11,262.6	-	410.00	410.00	-	3	3		
	공용주차장2	2,223.0	2,223.0	-	-	-	-	-	-		
	공용주차장3	2,758.5	2,758.5	-	-	-	-	-	-		
	공용주차장6	1,874.3	1,874.3	-	-	-	-	-	-		
	광 장1	1,002.5	1,002.5	-	-	-	-	-	-		
	광 장2	600.3	600.3	-	-	-	-	-	-		
	광 장3	601.6	601.6	-	-	-	-	-	-		
	광 장6	1,142.5	1,142.5	-	-	-	-	-	-		
	광 장7	1,265.7	1,265.7	-	-	-	-	-	-		
비지터센터	1,857.9	1,857.9	-	1,800.00	1,800.00	-	3	3			
소 계	116,284.1	116,284.1	-	73,966.94	73,966.94	-	-	-			
숙박 시설	하이랜드호텔	24,889.5	24,889.5	-	17,500.00	17,500.00	-	8	8	150실	
	엘리시움빌라1	11,736.9	11,736.9	-	4,526.79	4,526.79	-	3	3	30실	
	엘리시움빌라2 (프라이빗빌라)	32,779.1	32,779.1	-	1,470.15	1,470.15	-	3	3	5실 (부속동)	
	메이플빌리지1	여관 (일반숙박) 1	6,621.3	6,621.3	-	5,400.00	5,400.00	-	7	7	38실
		여관 2	2,283.5	2,283.5	-	2,000.00	2,000.00	-	7	7	30실
		여관 3	2,495.0	2,495.0	-	2,000.00	2,000.00	-	7	7	30실
		여관 4	2,412.4	2,412.4	-	2,000.00	2,000.00	-	7	7	30실
		여관 8	1,300.6	1,300.6	-	1,200.00	1,200.00	-	3~5	3~5	25실
		여관 9	1,747.9	1,747.9	-	1,600.00	1,600.00	-	3~5	3~5	30실
	메이플빌리지2	여관 (일반숙박) 5	3,227.5	3,227.5	-	3,300.00	3,300.00	-	3	3	23실
		여관 6	1,725.0	1,725.0	-	2,300.00	2,300.00	-	7	7	40실
	레인보우펜션	여관 7	1,604.4	1,604.4	-	2,300.00	2,300.00	-	7	7	40실
		펜션 1	701.4	701.4	-	830.00	830.00	-	3	3	5실
		펜션 2	730.9	730.9	-	870.00	870.00	-	3	3	6실
		펜션 3	619.9	619.9	-	750.00	750.00	-	3	3	5실
		펜션 4	626.2	626.2	-	750.00	750.00	-	3	3	5실
		펜션 5	527.2	527.2	-	630.00	630.00	-	3	3	3실
		펜션 6	1,083.6	1,083.6	-	1,280.00	1,280.00	-	3	3	9실
펜션 7		596.5	596.5	-	700.00	700.00	-	3	3	4실	
펜션 8		811.0	811.0	-	970.00	970.00	-	3	3	6실	
펜션 9		460.5	460.5	-	540.00	540.00	-	3	3	3실	
펜션 10		592.4	592.4	-	700.00	700.00	-	3	3	4실	
펜션 11		406.5	406.5	-	480.00	480.00	-	3	3	3실	
펜션 12		564.6	564.6	-	670.00	670.00	-	3	3	5실	
펜션 13		673.5	673.5	-	770.00	770.00	-	3	3	4실	
펜션 14	427.6	427.6	-	490.00	490.00	-	3	3	3실		
펜션 15	397.1	397.1	-	460.00	460.00	-	3	3	3실		
펜션 16	622.2	622.2	-	740.00	740.00	-	3	3	4실		
펜션 17	551.7	551.7	-	640.00	640.00	-	3	3	3실		
펜션 18	702.2	702.2	-	840.00	840.00	-	3	3	5실		
클라우드 힐스	10,816.0	10,816.0	-	14,060.00	14,060.00	-	8	8			

구 분			부 지 면 적 (㎡)			연 면 적 (㎡)			총 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소 계			41,661.6	41,661.6	-	44,941.00	44,941.00	-	-	-	
상 가 시 설	F&C mall	상 가 1	1,873.7	1,873.7	-	2,600.00	2,600.00	-	5	5	
		상 가 2	3,989.8	3,989.8	-	5,200.00	5,200.00	-	5	5	
		상 가 3	3,571.3	3,571.3	-	3,800.00	3,800.00	-	5	5	
		상 가 4	1,530.7	1,530.7	-	2,100.00	2,100.00	-	5	5	
		상 가 5	1,874.9	1,874.9	-	2,500.00	2,500.00	-	5	5	
		상 가 6	2,931.6	2,931.6	-	3,800.00	3,800.00	-	5	5	
		상 가 7	3,501.3	3,501.3	-	4,200.00	4,200.00	-	5	5	
	수변 상가	상 가 8	732.5	732.5	-	900.00	900.00	-	3	3	
		상 가 9	1,012.2	1,012.2	-	1,100.00	1,100.00	-	3	3	
		상 가 10	2,119.1	2,119.1	-	1,500.00	1,500.00	-	1~2	1~2	
		상 가 11	2,164.4	2,164.4	-	1,500.00	1,500.00	-	1~2	1~2	
		상 가 12	1,954.8	1,954.8	-	1,400.00	1,400.00	-	1~2	1~2	
	야외상가	상 가 12	1,954.8	1,954.8	-	1,400.00	1,400.00	-	1~2	1~2	
	단풍미인환우관			5,188.7	5,188.7	-	8,640.00	8,640.00	-	3	3
전통문화의 집			8,293.8	8,293.8	-	5,040.00	5,040.00	-	4	4	
주유소/상가			922.8	922.8	-	661.00	661.00	-	1~3	1~3	
소 계			980,421.8	980,421.8	-	34,731.94	34,731.94	-	-	-	-
관 광 휴 양 · 오 락 시 설 지 구	운동오락 시설	골프장지구	913,884.4	913,884.4	-	12,890.58	12,890.58	-	5	5	골프텔(51실) 창고동
	휴양문화 시설	블루밍가든	19,677.7	19,677.7	-	-	-	-	-	-	공원2,3
		이벤트가든	4,925.6	4,925.6	-	-	-	-	-	-	명칭변경 (기정 : 이벤 트광장 → 변경 : 이 벤트가든) /공원1
		샌드가든	2,122.6	2,122.6	-	-	-	-	-	-	
		연수원	34,266.1	34,266.1	-	19,188.28	19,188.28	-	8	8	JB연수원
		산림휴양 문화시설	5,545.4	5,545.4	-	2,653.08	2,653.08	-	3	3	-
소 계			338,372.8	336,851.8	-	-	-	-	-	-	-
기타	녹지 및 기타		338,372.8	336,851.8	감)1,521.0	-	-	-	-	-	-

■ 관련조서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605,364.9	-	1,605,364.9	100%	
계획관리지역	1,605,364.9	-	1,605,364.9	100%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9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전북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 일원	1,605,364.9	-	1,605,364.9	2006.6.27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9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북 정읍시 용산동, 신정동 일원	1,605,364.9	-	1,605,364.9	2006.6.27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605,364.9	-	1,605,364.9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128,624.6	증)1,521.0	130,145.6	8.1	• 비지터센터, 공용주차장, 광장, 도로(면적증가)	
숙박시설지구	116,284.1	-	116,284.1	7.2	• 하이랜드호텔, 메이플빌리지, 클라우드힐스, 엘 리시움빌라	
상가시설지구	41,661.6	-	41,661.6	2.6	• F&C Mall, 수변상가, 단풍미인 환우관, 전통 문화의 집, 주유소 및 상가	
관광 휴양 · 오락 시설 지구	소계	980,421.8	-	980,421.8	61.1	
	운동·오락시설	913,884.4	-	913,884.4	56.9	• 골프장지구
	휴양·문화시설	66,537.4	-	66,537.4	4.1	• 블루밍가든, 이벤트가든(명칭변경), 샌드가든, JB연 수원, 산립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지구	338,372.8	감)1,521.0	336,851.8	21.0	• 녹지 및 기타(하천 등) (녹지 면적감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교통시설 “변경”
 - 도로 총괄표(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위 : 개소, m, m²)

유형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기정	22	6,751	104,035.7	6	1,653	23,635.5	7	1,060	11,496.5	9	4,038	68,903.7
	변경	22	6,751	105,556.7	6	1,653	23,635.5	7	1,060	11,496.5	9	4,038	70,424.7
대로	기정	1	2,196	45,959.1	-	-	-	-	-	-	1	2,196	45,959.1
	변경	1	2,196	47,480.1	-	-	-	-	-	-	1	2,196	47,480.1
중로		10	2,638	38,707.5	1	524	11,166.5	3	310	4,855.6	6	1,804	22,685.4
소로		11	1,917	19,369.1	5	1,129	12,469.0	4	750	6,640.9	2	38	259.2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17-28	주간선도로	2,196	용산동1087	신정동산158-4	일반도로		2005.7.28	정읍시고시 제2022-73호
변경	대로	3	1	17-30	주간선도로	2,196	용산동1087	신정동산158-4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7	22	보조간선도로	524	용산동1087	용산동1054	일반도로		2006.6.27 (정읍시고시 제2006-44호)	정읍시고시 제2016-63반영
기정	중로	2	1	15	특수도로	237	용산동1066	용산동106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중로	2	2	15	특수도로	46	용산동1081	용산동1066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중로	2	3	15	특수도로	27	용산동1066	용산동1066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중로	3	17	12	집산도로	717	용산동1084	용산동082	일반도로		"	정읍시고시 제2016-63반영
기정	중로	3	18	12	집산도로	221	용산동1084	신정동1624	일반도로		"	정읍시고시 제2016-63반영
기정	중로	3	19	12	집산도로	319	용산동1081	용산동1082	일반도로		"	정읍시고시 제2016-63반영
기정	중로	3	20	12	국지도로	220	신정동1620	신정동1626	일반도로		"	정읍시고시 제2016-63반영
기정	중로	3	21	12	집산도로	207	신정동1624	신정동1626	일반도로		"	정읍시고시 제2016-63반영
기정	중로	3	22	13	집산도로	120	용산동1073	용산동1053	일반도로		2010.10.16 (정읍시고시 제2020-102호)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43	용산동1080	용산동1061	보행자전용도로		2006.6.27 (정읍시고시 제2006-44호)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32	용산동1082	용산동106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42	용산동1082	용산동106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1	22	10-34	국지도로	714	신정동1626	신정동1303-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298	신정동1617	신정동1617	일반도로		"	정읍시고시 제2016-63반영
기정	소로	2	103	8	국지도로	156	신정동1620	신정동1603	일반도로		2012.12.27 (정읍시고시 제2012-86호)	정읍시고시 제2016-63반영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85	신정동1626	신정동16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7	9	국지도로	330	신정동1619	신정동1618	일반도로		"	정읍시고시 제2016-63반영
기정	소로	2	4	9	국지도로	79	신정동1619	신정동159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	신정동1619	신정동157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26	신정동1619	신정동1580	일반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 3-1	대로 3-1	• L = 2,196m (변경없음) • B = 17*28m → 17*30m • 면적 : 기정) 45,959.1㎡ → 변경) 47,480.1㎡(증 1,521.0㎡)	• 관광지와 인접한 주차장 조성으로 진출입구 확보 및 장래 통행 수요를 감안하여 도로 일부 구간 폭원을 확보하고자 함

•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소계	-	-	18,118.4	-	18,118.4	-	-
기정	1	주차장	용산동 1069	11,262.6	-	11,262.6	2006.6.27 (정읍시고시 2006-44호)	
기정	2	주차장	용산동 1074	2,223.0	-	2,223.0	2012.12.27 (정읍시고시 2012-86호)	
기정	3	주차장	신정동 1572	2,758.5	-	2,758.5	2006.6.27 (정읍시고시 2006-44호)	
기정	6	주차장	신정동 산155-22 일원	1,874.3	-	1,874.3	2012.12.27 (정읍시고시 2012-86호)	정읍시고시 제2022-42번영

■ 공간시설 “신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증)24,603.3	24,603.3		
신설	1	공원	소공원	용산동 1058	-	증)4,925.6	4,925.6	금회 결정	이벤트가든
신설	2	공원	소공원	용산동 1073	-	증)10,160.4	10,160.4	금회 결정	블루밍가든
신설	3	공원	소공원	용산동 1075	-	증)9,517.3	9,517.3	금회 결정	블루밍가든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공원	• 소공원 신설 기정 0㎡ → 변경 4,925.6㎡ 증) 4,925.6㎡	• 관광지 내의 시설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신설)하여 관리하고자 함
2	공원	• 소공원 신설 기정 0㎡ → 변경 10,160.4㎡ 증) 10,160.4㎡	• 관광지 내의 시설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신설)하여 관리하고자 함
3	공원	• 소공원 신설 기정 0㎡ → 변경 9,517.3㎡ 증) 9,517.3㎡	• 관광지 내의 시설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신설)하여 관리하고자 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총괄)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1,605,364.9	-	1,605,364.9	100.0	
관광 휴양 시설 용지	계	1,138,367.5	-	1,138,367.5	70.9	
	숙박시설	116,284.1	-	116,284.1	7.2	
	상가시설	41,661.6	-	41,661.6	2.6	
	운동·오락시설	913,884.4	-	913,884.4	56.9	
	휴양·문화시설	66,537.4	-	66,537.4	4.1	
공공 시설 용지	계	128,624.6	증)1,521.0	130,145.6	8.1	
	도로	104,035.7	증)1,521.0	105,556.7	6.6	
	주차장	18,118.4	-	18,118.4	1.1	
	광장	4,612.6	-	4,612.6	0.3	
	비지터센터	1,857.9	-	1,857.9	0.1	
녹 지 용 지		338,372.8	감)1,521.0	336,851.8	21.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도면번호	가구 및 획지	기 정			변 경			비고	
		면 적(㎡)	획 지		면 적(㎡)	획 지			
			위 치	면 적(㎡)		면 적(㎡)	위 치		면 적(㎡)
	총 계	1,604,485.0	-	1,604,485.0	1,605,364.9	-	1,605,364.9		
(I)	숙 박 시 설	116,284.1	-	116,284.1	116,284.1	-	116,284.1		
I - 1	하이랜드호텔	24,889.5	용산동 1054	24,889.5	24,889.5	용산동 1054	24,889.5		
I - 2	엘리시움빌라1	11,736.90	용산동 1070	11,736.90	11,736.90	용산동 1070	11,736.90		
	엘리시움빌라2 (프라이빗빌라)	32,779.10	용산동 1070	32,779.10	32,779.10	용산동 1070	32,779.10		
I - 5-1	메이플 빌리지 I	여관1 (생활숙박)	신정동 1602	6,621.3	6,621.3	신정동 1602	6,621.3		
I - 5-2		여관2	신정동 1609	2,283.5	2,283.5	신정동 1609	2,283.5		
I - 5-3		여관3	신정동 1610	2,495.0	2,495.0	신정동 1610	2,495.0		
I - 5-4		여관4	신정동 1611	2,412.4	2,412.4	신정동 1611	2,412.4		
I - 5-5		여관8	신정동 1612	1,300.6	1,300.6	신정동 1612	1,300.6		
I - 5-6		여관9	신정동 1613	1,747.9	1,747.9	신정동 1613	1,747.9		
I - 5-7		여관10	신정동 1614	1,550.0	1,550.0	신정동 1614	1,550.0		
I - 6-1		메이플 빌리지 II	여관5 (생활숙박)	신정동 1567	3,227.5	3,227.5	신정동 1567	3,227.5	
I - 6-2			여관6	신정동 1568	1,725.0	1,725.0	신정동 1568	1,725.0	
I - 6-3			여관7	신정동 1569	1,604.4	1,604.4	신정동 1569	1,604.4	
I - 7	레인 보우 펜션	소 계	-	11,095.0	11,095.0	-	11,095.0		
I - 7-1		펜션1	신정동 1573	701.4	701.4	신정동 1573	701.4		
I - 7-2		펜션2	신정동 1574	730.9	730.9	신정동 1574	730.9		
I - 7-3		펜션3	신정동 1589	619.9	619.9	신정동 1589	619.9		
I - 7-4		펜션4	신정동 1590	626.2	626.2	신정동 1590	626.2		
I - 7-5		펜션5	신정동 1591	527.2	527.2	신정동 1591	527.2		
I - 7-6		펜션6	신정동 1592	1,083.6	1,083.6	신정동 1592	1,083.6		
I - 7-7		펜션7	신정동 1594	596.5	596.5	신정동 1594	596.5		
I - 7-8		펜션8	신정동 1593	811.0	811.0	신정동 1593	811.0		
I - 7-9		펜션9	신정동 1588	460.5	460.5	신정동 1588	460.5		
I - 7-10		펜션10	신정동 1587	592.4	592.4	신정동 1587	592.4		
I - 7-11		펜션11	신정동 1586	406.5	406.5	신정동 1586	406.5		
I - 7-12		펜션12	신정동 1585	564.6	564.6	신정동 1585	564.6		
I - 7-13		펜션13	신정동 1584	673.5	673.5	신정동 1584	673.5		
I - 7-14		펜션14	신정동 1582	427.6	427.6	신정동 1582	427.6		
I - 7-15		펜션15	신정동 1583	397.1	397.1	신정동 1583	397.1		
I - 7-16		펜션16	신정동 1580	622.2	622.2	신정동 1580	622.2		
I - 7-17		펜션17	신정동 1579	551.7	551.7	신정동 1579	551.7		
I - 7-18	펜션18	신정동 1577	702.2	702.2	신정동 1577	702.2			
I - 8	클라우드 힐스	10,816.0	용산동 1055	10,816.0	10,816.0	용산동 1055	10,816.0		

도면번호	가구 및 획지		기 정			변 경			비고
			면 적(㎡)	획 지		면 적(㎡)	획 지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Ⅱ)	상 가 시 설		41,661.6	-	41,661.6	41,661.6	-	41,661.6	
Ⅱ-1-1	F&Cmall	상가1	1,873.7	용산동 1062	1,873.7	1,873.7	용산동 1062	1,873.7	
Ⅱ-1-2		상가2	3,989.8	용산동 1064	3,989.8	3,989.8	용산동 1064	3,989.8	
Ⅱ-1-3		상가3	3,571.3	용산동 1067	3,571.3	3,571.3	용산동 1067	3,571.3	
Ⅱ-1-4		상가4	1,530.7	용산동 1060	1,530.7	1,530.7	용산동 1060	1,530.7	
Ⅱ-1-5		상가5	1,874.9	용산동 1063	1,874.9	1,874.9	용산동 1063	1,874.9	
Ⅱ-1-6		상가6	2,931.6	용산동 1065	2,931.6	2,931.6	용산동 1065	2,931.6	
Ⅱ-1-7		상가7	3,501.3	용산동 1068	3,501.3	3,501.3	용산동 1068	3,501.3	
Ⅱ-2-1	수변 상가	상가8	732.5	신정동 1570	732.5	732.5	신정동 1570	732.5	
Ⅱ-2-2		상가9	1,012.2	신정동 1571	1,012.2	1,012.2	신정동 1571	1,012.2	
Ⅱ-2-3		상가10	2,119.1	신정동 1604	2,119.1	2,119.1	신정동 1604	2,119.1	
Ⅱ-2-4		상가11	2,164.4	신정동 1605	2,164.4	2,164.4	신정동 1605	2,164.4	
Ⅱ-2-5	일반 상가	상가12	1,954.8	신정동 1607	1,954.8	1,954.8	신정동 1607	1,954.8	
Ⅱ-3	단풍미인 한우관		5,188.7	신정동 1596	5,188.7	5,188.7	신정동 1596	5,188.7	
Ⅱ-4	전통문화의집		8,293.8	신정동 1600	8,293.8	8,293.8	신정동 1600	8,293.8	
Ⅱ-5	주유소 및 상가		922.8	신정동 1599 신정동 1601	922.8	922.8	신정동 1599 신정동 1601	922.8	
(Ⅲ)	운동·오락시설		913,884.4	-	913,884.4	913,884.4	-	913,884.4	
Ⅲ-1	골프장		913,884.4	신정동 1632일원	913,884.4	913,884.4	신정동 1632일원	913,884.4	
(Ⅳ)	휴양·문화시설		66,537.4	-	66,537.4	66,537.4	-	66,537.4	
Ⅳ-2	블루밍가든		19,677.7	용산동 1073	19,677.7	19,677.7	용산동 1073	19,677.7	
Ⅳ-3	이벤트가든		4,925.6	용산동 1058	4,925.6	4,925.6	용산동 1058	4,925.6	
Ⅳ-4	샌드가든		2,122.6	용산동 1056	2,122.6	2,122.6	용산동 1056	2,122.6	
Ⅳ-5	JB연수원		34,266.1	용산동 1078	34,266.1	34,266.1	용산동 1078	34,266.1	
Ⅳ-6	산림휴양 문화시설		5,545.4	용산동 1053	5,545.4	5,545.4	용산동 1053	5,545.4	

도면번호	가구 및 획지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획 지		면 적(㎡)	획 지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V)	공공시설	128,624.6	-	128,624.6	130,145.6	-	130,145.6	
V-1	비지터 센터	1,857.9	용산동 1059	1,857.9	1,857.9	용산동 1059	1,857.9	
V-2	공용 주차장1	11,262.6	용산동 1069	11,262.6	11,262.6	용산동 1069	11,262.6	
V-3	공용 주차장2	2,223.0	용산동 1074	2,223.0	2,223.0	용산동 1074	2,223.0	
V-4	공용 주차장3	2,758.5	신정동 1572	2,758.5	2,758.5	신정동 1572	2,758.5	
V-5	공용 주차장6	1,874.3	신정동 산155-23	1,874.3	1,874.3	신정동 산155-23	1,874.3	
V-6	광장1	1,002.5	용산동 1066	1,002.5	1,002.5	용산동 1066	1,002.5	
V-7	광장2	600.3	용산동 1066	600.3	600.3	용산동 1066	600.3	
V-8	광장3	601.6	용산동 1061	601.6	601.6	용산동 1061	601.6	
V-9	광장6	1,142.5	신정동 198-2	1,142.5	1,142.5	신정동 198-2	1,142.5	
V-10	도 로	104,035.7	용산동 1620일원	104,035.7	105,556.7	용산동 1620일원	105,556.7	
V-11	광장7	1,265.7	용산동 1077	1,265.7	1,265.7	용산동 1077	1,265.7	
(VI)	녹 지	338,372.8	신정동 1599일원	338,372.8	336,851.8	신정동 1599일원	336,851.8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I-1	용산동 1054	용도	• 숙박시설(하이랜드호텔)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8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2	용산동 1070	용도	• 숙박시설(엘리시움빌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5-1	신정동 1602	용도	• 숙박시설(여관1, 일반숙박)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5-2	신정동 1609	용도	• 숙박시설(여관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I-5-3	신정동 1610	용도	• 숙박시설(여관3)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5-4	신정동 1611	용도	• 숙박시설(여관4)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6-1	신정동 1567	용도	• 숙박시설(여관5, 일반숙박)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6-2	신정동 1568	용도	• ◦ 숙박시설(여관6)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6-3	신정동 1569	용도	• 숙박시설(여관7)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I-5-5	신정동 1612	용도	• 숙박시설(여관8)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5-6	신정동 1613	용도	• 숙박시설(여관9)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5-7	신정동 1614	용도	• 숙박시설(여관10)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1	신정동 1573	용도	• 숙박시설(펜션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2	신정동 1574	용도	• 숙박시설(펜션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3	신정동 1589	용도	• 숙박시설(펜션3)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I-7-4	신정동 1590	용도	• 숙박시설(펜션4)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5	신정동 1591	용도	• 숙박시설(펜션5)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6	신정동 1592	용도	• 숙박시설(펜션6)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7	신정동 1594	용도	• 숙박시설(펜션7)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8	신정동 1593	용도	• 숙박시설(펜션8)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9	신정동 1588	용도	• 숙박시설(펜션9)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I-7-10	신정동 1587	용도	• 숙박시설(펜션10)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11	신정동 1586	용도	• 숙박시설(펜션1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12	신정동 1585	용도	• 숙박시설(펜션1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13	신정동 1584	용도	• 숙박시설(펜션13)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14	신정동 1582	용도	• 숙박시설(펜션14)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15	신정동 1583	용도	• 숙박시설(펜션15)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I-7-16	신정동 1580	용도	• 숙박시설(펜션16)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17	신정동 1579	용도	• 숙박시설(펜션17)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7-18	신정동 1577	용도	• 숙박시설(펜션18)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8	용산동 1055	용도	• 숙박시설(클라우드 힐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8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I-1-1	용산동 1062	용도	• 상가시설(상가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보행자도로변 : 1m 건축지정선 - 외곽도로변 : 2m 건축한계선
기정	II-1-2	용산동 1064	용도	• 상가시설(상가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보행자도로변 : 1m 건축지정선 - 외곽도로변 : 2m 건축한계선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II-1-3	용산동 1067	용도	• 상가시설(상가3)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보행자도로변 : 1m 건축지정선 - 외곽도로변 : 2m 건축한계선
기정	II-1-4	용산동 1060	용도	• 상가시설(상가4)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보행자도로변 : 1m 건축지정선 - 외곽도로변 : 2m 건축한계선
기정	II-1-5	용산동 1063	용도	• 상가시설(상가5)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보행자도로변 : 1m 건축지정선 - 외곽도로변 : 2m 건축한계선
기정	II-1-6	용산동 1065	용도	• 상가시설(상가6)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보행자도로변 : 1m 건축지정선 - 외곽도로변 : 2m 건축한계선
기정	II-1-7	용산동 1068	용도	• 상가시설(상가7)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보행자도로변 : 1m 건축지정선 - 외곽도로변 : 2m 건축한계선
기정	II-2-1	용산동 1570	용도	• 상가시설(상가8)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II-2-2	용산동 1571	용도	• 상가시설(상가9)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 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I-2-3	신정동 1604	용도	• 상가시설(상가10)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I-2-4	신정동 1605	용도	• 상가시설(상가1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I-2-5	신정동 1607	용도	• 상가시설(상가1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I-3	신정동 1596	용도	• 상가시설(단풍미인한우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I-4	신정동 1600	용도	• 상가시설(전통문화의 집)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II-5	신정동 1601	용도	• 상가시설(주유소/상가) ※정읍시 고시 제2016 - 77호에 따라 도면표시 번호 정정(B(a)→B(a,b))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1~3층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II-1	신정동 1632 일원	용도	• 운동·오락시설 (골프장)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VI-5	용산동 1078번지 일원	용도	• 휴양·문화시설(연수원)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8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IV-6	용산동 1053	용도	• 휴양·문화시설(관광휴게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V-1	용산동 1059	용도	• 공공시설(비지터센터)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기정	V-2	용산동 1069	용도	• 공공시설(화장실, 관리사무소)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5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치	• 도 면 참 조
			형태	• 담장을 배제하며 식재 및 조경에 의한 시설구분
			색채	• 색채계획참조
			건축선	-

고창군 고시 제2023-140호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공설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체육청시설사업소(063-560-8914) 및 건설도시과(063-560-2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4일

고 창 군 수

①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체육 시설	고창읍 월암리 316 일원	254,825	-	254,825	고창군 고시 1998-146호 (1998.07.08.)	

② 군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 “경미한 변경”

1. 총괄조서

구분	세 부 시 설 명		부지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	254,825	-	254,825	100.0	
운동시설 용지	주경기장 외 12개 시설	주경기장 외 12개 시설	118,230	-	118,230	46.4	
공공시설 용지	도로, 주차장, 진입광장, 화장실	도로, 주차장, 진입광장, 화장실	79,429	-	79,429	31.2	
관리시설 용지	창고, 테니스장사무실	창고, 테니스장사무실	1,030	-	1,030	0.4	
기타시설 용지	청소년수련관 및 농구장	청소년수련관 및 농구장	5,950	-	5,950	2.3	
녹지용지	복원녹지	복원녹지	50,186	-	50,186	19.7	

2. 세부 시설계획 조서

구분	세부시설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440	증) 280	19,720	26,840	증) 280	27,120		
운동 시설 용지	소계	16,530	증) 140	16,670	20,830	증) 140	20,970	건폐율 9.4%, 용적률 10.5%	
	1	주경기장	5,490	-	5,490	5,840	-	5,840	
	2	보조경기장	-	-	-	-	-	-	
	3	테니스장	-	-	-	-	-	-	
	4	씨름장	380	-	380	380	-	380	
	5	축 구 장	200	-	200	250	-	250	
	6	야 구 장	500	-	500	600	-	600	
	7	파크골프장	-	-	-	-	-	-	
	8	전용구장	2,500	-	2,500	2,500	-	2,500	
	9	공도장	360	증)140	500	360	증)140	500	
	10	실내체육관	5,100	-	5,100	7,500	-	7,500	
	11	실내야구장	700	-	700	700	-	700	
	12	휴게소	200	-	200	200	-	200	
	13	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1,100	-	1,100	2,500	-	2,500	
14	다목적구장	-	-	-	-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400	-	400	400	-	400		
	15	도로	-	-	-	-	-	-	
	16	주차장(1)	-	-	-	-	-	-	
	17	주차장(2)	-	-	-	-	-	-	
	18	주차장(3)	-	-	-	-	-	-	
	19	주차장(4)	-	-	-	-	-	-	
	20	주차장(5)	-	-	-	-	-	-	
	21	주차장(6)	-	-	-	-	-	-	
	22	주차장(7)	-	-	-	-	-	-	
	23	주차장(8)	-	-	-	-	-	-	
	24	진입광장	-	-	-	-	-	-	
	25	보행자도로	-	-	-	-	-	-	
	26	화장실(1)	90	-	90	90	-	90	
	27	화장실(2)	110	-	110	110	-	110	
28	화장실 및 샤워장1	100	-	100	100	-	100		
29	화장실 및 샤워장2	100	-	100	100	-	100		
30	잔디광장	-	-	-	-	-	-		
관리 시설 용지	소계	410	증) 140	550	400	-	400		
	31	창고	200	-	200	200	-	200	
	32	테니스장 사무실	60	증) 140	200	60	증) 140	200	
33	축구장관리동	150	-	150	150	-	150		
기타 시설 용지	소계	2,100	-	2,100	5,200	-	5,200		
	34	청소년수련관 및 농구장	2,100	-	2,100	5,200	-	5,200	청소년 수련관, 식당, 기숙사
녹지 용지	소계	-	-	-	-	-	-		
	35	복원녹지	-	-	-	-	-	-	

3. 군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운동장 (공설 운동장)	운동 시설 용지	“변경” • 궁도장	• 쾌적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궁도장 면적 변경
		관리 시설 용지	“변경” • 테니스장사무실	• 쾌적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테니스장 사무실 면적 변경

4. 관련도서 및 세부조성계획 : “실음생략”